

漁港消息

발행결 정 孫 井 植
편집인 金 在 克
인체인 金 在 克

特 殊 韓 國 漁 港 協 會
特 法 人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TEL. 568-6651~3
568-5595~6
FAX. 568-6653

月刊: 비매 품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會 訓
● 誠 實
● 奉 仕
● 創 意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어항 지정기준 완화

2種港 거리관계 없이 指定 3種港 10km로 대폭 단축

어촌定住圈 개발과 연계

사업비 보조 廳과 협의 사용·점용기간 등 규정

어항법시행규칙
8月 19日 시행

어항지정기준에서 항간 거리가 대폭 완화됨으로 써 항간이 어촌정주권 개발과 연계, 어항의 확대 및 개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어항지정기준에서 항간 거리가 대폭 완화됨으로 써 항간이 어촌정주권 개발과 연계, 어항의 확대 및 개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어항지정기준에서 항간 거리가 대폭 완화됨으로 써 항간이 어촌정주권 개발과 연계, 어항의 확대 및 개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어항지정기준에서 항간 거리가 대폭 완화됨으로 써 항간이 어촌정주권 개발과 연계, 어항의 확대 및 개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경쟁력 강화 誘導에 힘쓴다

어항지정기준에서 항간 거리가 대폭 완화됨으로 써 항간이 어촌정주권 개발과 연계, 어항의 확대 및 개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사유평점제도 규제완화 건의 배경

焦點

행정규제를 一脈相通 業界도 全力投球해야

어항지정기준에서 항간 거리가 대폭 완화됨으로 써 항간이 어촌정주권 개발과 연계, 어항의 확대 및 개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규제완화建議 漁港協

어항지정기준에서 항간 거리가 대폭 완화됨으로 써 항간이 어촌정주권 개발과 연계, 어항의 확대 및 개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어항지정기준에서 항간 거리가 대폭 완화됨으로 써 항간이 어촌정주권 개발과 연계, 어항의 확대 및 개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어항지정기준에서 항간 거리가 대폭 완화됨으로 써 항간이 어촌정주권 개발과 연계, 어항의 확대 및 개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日本全國漁港大會 개최 孫井植회장 招請 참석

어항지정기준에서 항간 거리가 대폭 완화됨으로 써 항간이 어촌정주권 개발과 연계, 어항의 확대 및 개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漁港協 주관 第7回 漁港漁村 사진公募

當選작 60點

어항지정기준에서 항간 거리가 대폭 완화됨으로 써 항간이 어촌정주권 개발과 연계, 어항의 확대 및 개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어항지정기준에서 항간 거리가 대폭 완화됨으로 써 항간이 어촌정주권 개발과 연계, 어항의 확대 및 개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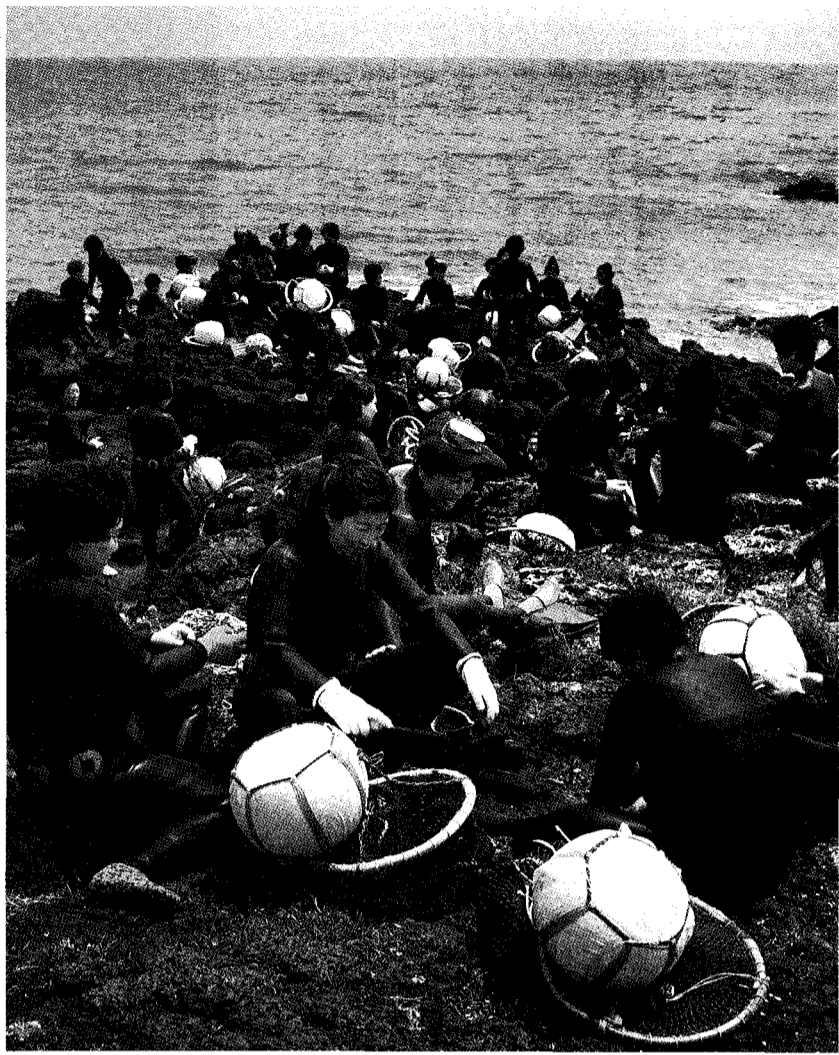
어항지정기준에서 항간 거리가 대폭 완화됨으로 써 항간이 어촌정주권 개발과 연계, 어항의 확대 및 개성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金賞 휴식 장효령씨 · 銀賞 작업 한순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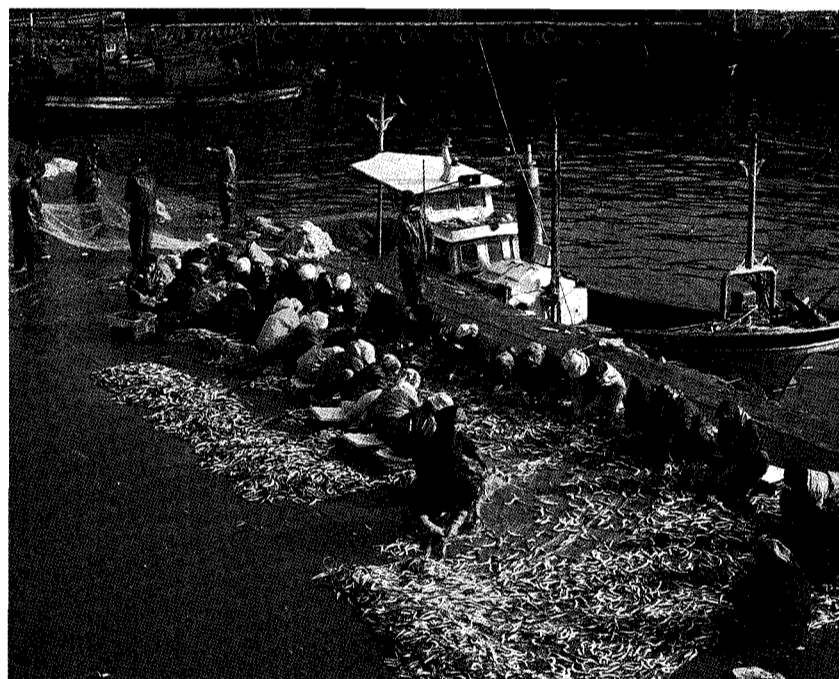
漁港漁村사진入賞작발표

모두 600여점 應募... 60點 선정, 9月2~3日 수산청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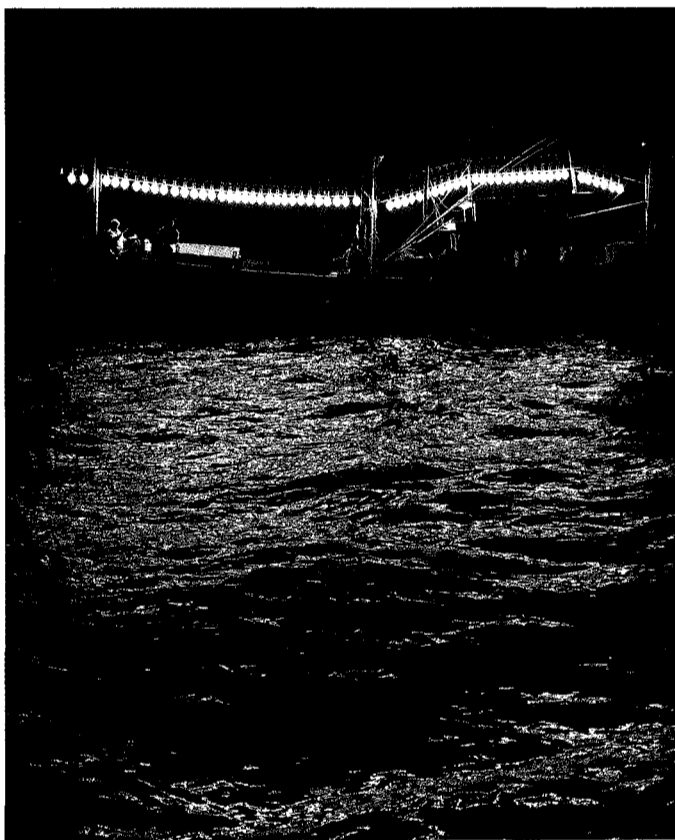
入選作 이상에 「한국寫協」 入會點數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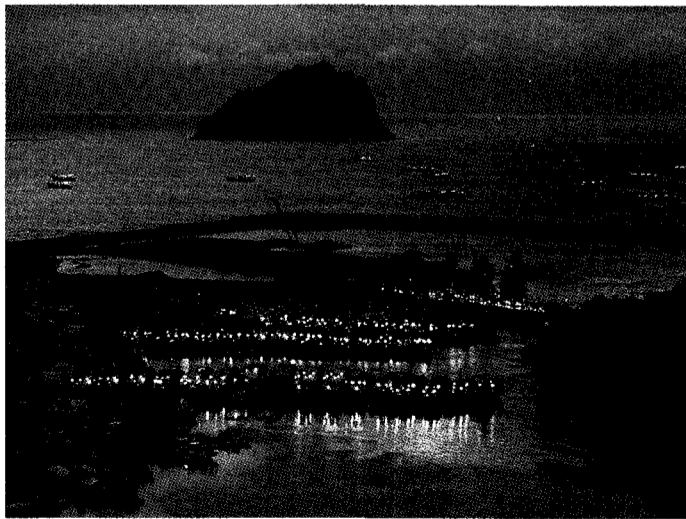
금상 : 「휴식」 장효령



은상 : 「작업」 한순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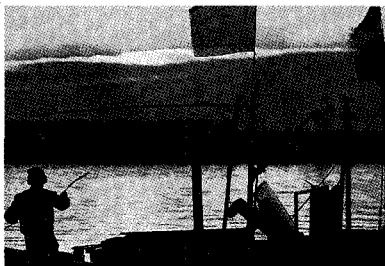
은상 : 「어부의 삶」 김사빈



동상 : 「야항」 박완호



동상 : 「미조항풍경」 박문찬



가작 : 「어부의 노래」 조경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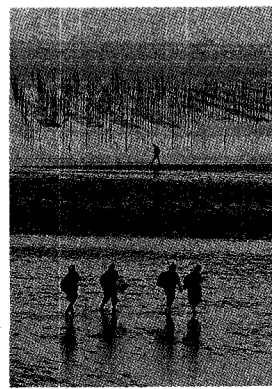
가작 : 「어획」 노명섭



가작 : 「공동작업」 박용신



가작 : 「어촌의 정경」 황상진



가작 : 「희망의 바다로」 신정의

한국어협회가 21세기
를 향한 선진어촌문
화창달과 어촌어촌 개발
의 촉진 및 효율적인 관
리, 그리고 일반국민의 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
난 88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어촌발전특별추진
해부터 입선작 이상의 작
품에 대해서는 사진작가
가 될 수 있는 한국사진
작가협회 입회점수가 인
정된다.

- △입선작 명단
- ▲금상 : 장효령 「휴식」
(수산청장 상패 및 상금 1백만원)
- ▲은상 : 한순애 「작업」
(수협중앙회장 상패 및 상금 50만원)
- ▲동상 : 김사빈 「어부의 삶」 (한국어협회장 상패 및 상금 50만원)
- ▲동상 : 박문찬 「미조항 풍경」 (한국어협회장 상패 및 상금 30만원)
- ▲가작 : 박용신 「공동작업」 (한국어협회장 상패 및 상금 10만원)
- ▲가작 : 신정의 「희망의 바다로」 (〃)
- ▲가작 : 조경옥 「어부의 노래」 (〃)
- ▲가작 : 황상진 「어촌의 정경」 (〃)
- ▲가작 : 노명섭 「어획」 (〃)
- △입선작 명단(상장 및 메달)
- △박용신 「공동작업」
- △박완호 「야항」
- △신정의 「희망의 바다로」
- △황상진 「어촌의 정경」
- △박민석 「어획」
- △박종하 「어촌의 아침」
- △김대길 「경매」외 2점
- △이문관 「작업」
- △이범수 「휴식」
- △박수길 「꿈나무」외 1점
- △김주대 「어항풍경」외 1점
- △한순애 「조개잡이」
- △박병창 「어촌의 하루」
- △최연숙 「항구정경」
- △장성규 「작업」
- △도성만 「양식장」
- △김춘수 「작업」
- △이규덕 「항구의 겨울」
- △김영준 「건조장의 겨울」
- △이상수 「풍어의 꿈」
- △곽일순 「귀가」
- △송일달 「생업」
- △김종만 「작업」
- △장효령 「표경선의 기다림」
- △김사빈 「갈매기섬의 하루」
- △김남규 「관매도 어촌사랑」외 1점
- △강원세 「만족」
- △장미옥 「어촌풍경」외 2점
- △김달호 「겨울 항구」
- △이병욱 「귀향」
- △여용철 「어로작업」
- △주재진 「어촌의 아침」
- △장주현 「정」

SOC 民資유치법制定

漁港시설도 對象

사업자 主務官署서 選定

정부는 8월 3일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 공포했다.

새로 제정 공포된 이 법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시토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민간유치대상사업의 투자수익, 건설기간, 예정지역, 수의상모집 및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민간유치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

都給算定法 개선키로

2년간 実績 年平均額으로

건설부는 공사도입실적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8월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따르면 도입한도액의 산정방법을 고쳐 총점에 1천 2백만 원 이상이면 50%를 인정하던 공사실적률을 2년간 실적의 연평균액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해 노후부담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노후의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재해액의 2배를 초과한 금액은 최근 2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백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감액하기로 했다.

건설부에서는 P-Q 심사시 무리한 저가낙찰업체를 경영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조달청은 P-Q 심사시 기준을 부실공사 방지에 초점을 맞춰 심사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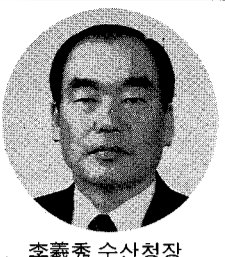
조달청은 부실공사 예방과 국내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 이행 능력이 취약한 업체 정무시정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신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적극적인 업체를 우대 조치하는 등 P-Q 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대수도 뉴메릭 케 이슨그를 개발 고기잡장 애 방지 일본白石인 헬름 질소 산소로 구성된 혼합기체를 호흡, 대수층에서 발생하는 고기잡장을 방지하는 대수도 뉴메릭 케 이슨그법을 개발했다.

이 공법의 호흡공기의 공급, 헬름 질소 내부의 공기 가압, 통신, 케 이슨에 기술자의 감시등을 지상의 관제실에서 담당한다.

또 이 공법은 1대당 3kg인 환경압이하에서는 종전대로 압축공기로 호흡하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저장된 마스크를 통해 헬름 혼합공기를 빨아들이 호흡하도록 되어 있으며, 케 이슨 내부에서는 기술자 4명이 30분동안 작업할 수 있다.

신규법을 적용 적용키로 한 各港사대교 주탑기초공사 현장인 골산신도가 해면에서 40m 높고 이온산 기압인 1.1로 4kg인 데 이온도의 공기의 뉴메릭 케 이슨공법이 적용되고 있어 세계최초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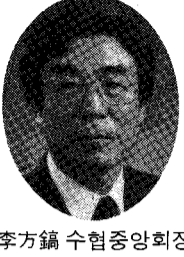
李義秀 수산청장

▲이회수 수산청장(8월 2일)은 4차 차원파장판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8월 2일 이



河星煥 한국어선협회장

▲이회수 수산청장(8월 3일)은 4차 차원파장판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8월 3일 이



李方鎬 수협중앙회장

▲이회수 수산청장(8월 3일)은 4차 차원파장판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8월 3일 이



孫井植 한국어선협회장

▲이회수 수산청장(8월 3일)은 4차 차원파장판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8월 3일 이

▲이회수 수산청장(8월 3일)은 4차 차원파장판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8월 3일 이

▲이회수 수산청장(8월 3일)은 4차 차원파장판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8월 3일 이

▲이회수 수산청장(8월 3일)은 4차 차원파장판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8월 3일 이

▲이회수 수산청장(8월 3일)은 4차 차원파장판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8월 3일 이

선진어항어촌건설에 '韓寧'이 앞장서겠습니다

主要業務

- 港灣의 開發調査, 整備, 計劃, 設計, 技術諮問
 - 貿易港, 沿岸港, 工業港, 漁港
 - 防波堤, 防潮堤, 浚渫工事
 - 各種 港灣施設, 海洋構造物
 - 港灣施設의 安全診斷
- 各種土木工事의 諸般基礎調査 妥當性 檢討, 計劃, 設計, 技術諮問
 - 道路 및 空港, 土質 및 基礎, 土木構造
 - 水資源, 上·下水道, 地域 및 都市計劃
- 工事施工監理

株式會社 韓寧엔지니어링

會長 東 暉 泰
代表理事 社長 金 丁 炯
技術士(港灣 및 海岸) 姜 昌 鎬
技術士(港灣 및 海岸) 姜 昌 鎬
技術士(港灣 및 海岸) 姜 昌 鎬

京畿道 果川市 別陽洞 1-20 TEL : (02)504-7181(代), FAX : (02)504-7184

시공실무

예산회계법령 개정내용

재무부는 지난 '93. 12. 31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존속기간을 종전 5년 이내에서 민법규정을 준용하여

최장 10년까지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전문감리회사가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공사근거를 명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예산

회계법을 개정시행한데 이어, '93. 12. 30 입법예고했던 예산회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295호 '94. 6. 30)과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4288호 '94. 6. 25)을 각각 공포·시행하였으며 하위규정인 계약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 제1995호) 및 관련 회

계예규를 '94. 7. 20자로 개정·시행하였는데, 개정내용 중 건설공사와 관련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편집자주)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내용

1.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제도 개선(제70조)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시기적으로 또는 공사량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는 원칙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되,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다.

종전에 동일구조물공사(기능이 상호연결된 일체식 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단일공사(예산상 단일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예규「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에서 분할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① 기본계획서나 설계서 등에 의하여 공구별로 분할 계획된 공사로서 이행기간, 성질, 목적등을 고려할 때 일괄발주가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도로, 하천, 지하철공사 등 10개 공종공사

② 건설업법상 특수공사중 조경공사

③ 다른 법률에 의해 분할발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기공사 등을 열거하고 있었던 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의 분할금지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분할발주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단서로 격상시켜 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공사의 규모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③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 한정하였다.

이에따라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 공사를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교실신축공사 동시에 시공되는 방음벽 설치공사(공간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함) ②아파트 신축후 소방설비공사(시간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함)

2.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근거신설(제74조, 부칙제2조)

공동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활성화 조항이 신설되었다. 다만, 동 내용은 정부조달시장개방과 관련 '96. 12. 31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동 규정의 신설에 따라 앞으로 공동도급공사의 입찰공고시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는 이외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조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지역소재업체를 1인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3.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실시근거 마련(제90조 제1항 제8호 신설)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

무상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추가 신설하였다.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동일공사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기술보유상황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입찰검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 추가하여 재무상태로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선금 및 대가지급 기한의 단축(제56조 제2항, 제117조)

선금지급기한은 종전에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한 것을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그 기한을 6일 단축하였다.

또한 공사준공금은 종전에 검사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약기간도 역시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단축하였다.

그리고 기성대가지급기한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7일 이내로 개선하였다.

5. 전문기관의 감독 및 검사직무의 겸직대상공사명시(제114조 제6항, 제116조 제4호 신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과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주관서공무원이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예산이월 가능공사 확대(제19조 제1항 신설)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대입찰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 대안입찰 및 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는 당해 회계연도내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면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계예규 개정내용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조정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중심분야별 배점한도가 종전에는 시공경험 40점, 기술능력 40점, 경영상태 20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공경험은 3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경영상태는 30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기술능력 40점은 불변) 이렇게 조정한 이유는 시공경험의 비중을 다소 낮추고 경영상태 비중을 높여 중소기업체들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참가가 비교적 용이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이와함께 각 발주기관이 공사의 성질·내용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시공중인 실적인정

종전에는 공사실적은 모두 준공실적만을 인정하여 왔으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 공종공사에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가 제한되어 있어 현재 시공중인 공사도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동종공사로서 당해 전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의 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한해서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다. 신인도 세부심사항목의 추가

신인도 심사분야(±10점)에 있어 종전에는 세부심사항목을 우수시공

업자로 지정된 자 등 5개항목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시 그밖에 6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대부분 마이너스(-)인 감점항목을 추가하여 신인도 심사를 대폭 강화하였다.

① 최근 3년동안 건설업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4)

② 최근 1년동안 하도급계열화 미흡 또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처벌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3)

③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태료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3)

④ 최근 1년동안 당해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일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2)

⑤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발점기준」에 해당되는 자(-3)

⑥ ISO국제품질 인증을 받은 자(+1)

2. 공사입찰유역서

가. 입찰무효사유 내용추가
총액단가입찰로 집행되는 공사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을 무효사유에 추가하였다. 이는 감사원의 건설공사입찰에 대한 감사시 입찰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가 단지 일 반관리비나 이윤금액만 다르게 되어 있을 뿐 다른 부분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입찰서가 많은 것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찰무효사유에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타인의 산출내

역서를 복사하거나 거의 그대로 이기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면 당사자의 입찰은 모두 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나. 계약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의무삭제

종전에는 국가 등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외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93. 12. 31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 개정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만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가. 대가지급기한 단축

검사에 합격되어 계약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준공대가는 종전 20일 이내에 14일 이내로(20일 이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기간도 14일 이내로) 단축되었고, 기성대가 지급기간도 14일 내에서 7일 이내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계약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선된 것이다.

나. 하자보수착공신고서 제출의무신설

계약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공사이행 소요기간을 명시하고 설계서를 첨부한 하자보수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에 착공하여야 한다. 이는 발주기관이 하자보수요구를 한 경우 계약자가 하자보수공사를 미루는 사례가 있어 하자보수이행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다.

4.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가. 재무상태로 제한할 경우의 세부기준명시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로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경쟁의 집행상 혼란을 막고자 회계예규에서 그 기준을 명시하였다.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부도상태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지 아니한 자들로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가.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선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종전에는 ①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급차공사가 전차공사와 수직적기초를 공통으로 할 때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규모가 급차공사규모의 25%이상인 때 ②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는 급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25%이상 중복되는 때 ③ 마감공사의 경우는 기시공물의 뒷

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주된 공사규모의 10%이내인 공사로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던 비율을 삭제하였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공사규모, 성질 또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의계약여부를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수의계약체결시 낙찰률 적용 특례규정신설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당해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로만 계약체결토록 되어 있던 것을 당해 수의계약대상공사가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선금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7. 선금지급요령

선금지급기한단축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경우 종전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였으나 이를 14일 이내로 지급토록 개선하였다.